예 산 총 칙

2015년도 추경 4 회

제 1 조 2015년도 세입 · 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 · 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405,564,930	12,166,948
일반회계	378,871,423	11,366,143
특별회계	26,693,507	800,805
기타특별회계	26,693,507	800,805
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872,205	26,166
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	846,023	25,381
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	565,718	16,972
주차장특별회계	429,879	12,896
수질개선특별회계	23,526,933	705,808
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	452,749	13,582

제 2 조 세입 · 세출 예산의 명세서는 별첨 "세입 · 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처 " 계속비 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,320,177천원으로 한다

제 5 조 일반회계 지방채 한도액은 9,4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을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수 있다.

제 7 조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교부된 경비는 간주처리하며, 이 경우 간주처리 된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이월가능하며, 다만 군비부담율이 수반되는 보조금의 경우 지방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다.